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탄소세법안

검 토 보 고

■ 용혜인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5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개요	4
가. 입법취지	4
나. 탄소가격제의 해외사례	7
다.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10
2. 법률안 조문체계 및 내용	16
가. 조문체계	16
나. 제명과 목적(안 제1조)	21
다. 과세대상과 세율(안 제2조 및 제7조)	22
라.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25
마.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의 신고(안 제6조 및 제8조)	26
바. 납부,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및 수시부과 등(안 제9조부터 제 13조까지)	27
사. 미납세 반출 및 면세(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29
아.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폐업 등의 신고,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31
자. 명령, 질문 및 검사, 탄소세의 사무관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34
차. 과태료(안 제27조)	35
카. 부칙	36

I. 개요

1.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8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나.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

18년 7억 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한편,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장벽 체계가 들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역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임(안 제6조).

- 다. 탄소세의 세율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으로 함(안 제7조 제1항).
-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0조).
-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외교관·조건부·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
- 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사.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3조).
- 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요

가. 입법취지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전 세계는 기후위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세계 각국은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¹⁾을 계기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실시²⁾하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5,510만 톤에서 7억 2,50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 잠정 6억 2,42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³⁾됨.

1)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서 2015. 12. 12.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협약임.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 9.24. 제정, 2022. 3.25. 시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과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을 규정하여 탄소저감정책의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함.

3)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전년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2024. 9.10,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백만톤 CO₂eq.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잠정)	2023년 (잠정)
총배출량 (증감률)	725.0 (2.2%)	699.2 (-3.6%)	654.4 (-6.4%)	676.6 (3.4%)	652.8 (-3.5%)	624.2 (-4.4%)
GDP (증감률)	18,120 (2.9%)	18,527 (2.2%)	18,395 (-0.7%)	19,187 (4.3%)	19,688 (2.6%)	19,956 (1.4%)
전 환	268.4 (6.8%)	248.7 (-7.3%)	218.1 (-12.3%)	223.7 (2.6%)	216.8 (-3.0%)	200.4 (-7.6%)
산업	260.8 (-0.3%)	256.4 (-1.7%)	246.8 (-3.8%)	262.2 (6.3%)	246.2 (-6.1%)	238.9 (-3.0%)
건물	52.1 (0.03%)	48.6 (-6.8%)	46.5 (-4.3%)	46.9 (0.8%)	47.5 (1.3%)	44.2 (-7.0%)
수송	96.2 (-1.0%)	99.0 (3.0%)	94.2 (-4.8%)	96.9 (2.9%)	95.8 (-1.1%)	94.9 (-1.0%)
폐기물	17.4 (-1.0%)	16.5 (-5.2%)	16.7 (1.0%)	16.1 (-3.5%)	15.8 (-1.6%)	15.6 (-1.3%)
농축수산	24.7 (-0.01%)	24.9 (1.1%)	25.6 (2.6%)	25.4 (-0.9%)	25.1 (-1.2%)	25.0 (-0.1%)
탈루	5.5 (9.5%)	5.0 (-9.1%)	6.6 (32.0%)	5.5 (-17.3%)	5.5 (0.1%)	5.2 (-4.7%)

자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2024. 9.10)

□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직접규제 외에도 탄소가격제 및 보조금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세제 개편이 지속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장벽 체계도 함께 도입하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예를 들면, EU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⁵⁾를 본격적으

4)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은 휘발유, 석유,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의 사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탄소세를 신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억제에 유도하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용혜인의원은 탄소세로 마련한 세입을 국민 및 실거주민(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탄소세 배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860호, 2024. 9. 10.)을 동 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하였음.

5) EU 회원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을 상대로 제화 등을 수출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

나. 탄소가격제의 해외사례⁶⁾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Instrument)는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외부성 비용에 대해 그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이 있음.
- 2023년 3월 기준 탄소가격제는 세계 34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이 중 탄소세를 시행 중인 국가는 27개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개국이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를 동시에 시행 중인 국가는 5개국임.

[탄소가격제 실시 국가 현황(2023년 3월 기준)]

대륙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유럽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영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한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

주: 1.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나 미집계
 2. 미국(5개 지역), 캐나다(8개 지역), 중국(9개 지역), 일본(2개 지역)은 지역별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나 각기 1개국으로만 집계
 3. 멕시코,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는 지역별 탄소세 실시 현황이 상이하나 1개국으로 집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세계은행, “Carbon Pricing Dashboard”를 바탕으로 작성)

6) 2024 대한민국 조세(2024. 5.),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 과세대상국 현황을 보면, 우루과이의 탄소세율이 155.9 USD/tCO₂eq로 가장 높고, 폴란드가 0.1 USD/tCO₂eq로 가장 낮음.

탄소세 과세대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분야 23개국, 난방분야 21개국, 수송분야 20개국, 발전분야 20개국 등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모든 화석에너지에 부과하나, 스페인(불화화합물), 우루과이(휘발유), 멕시코(천연가스 제외) 등과 같이 화석에너지 일부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음.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용도별 탄소세 실시 현황(2023년 3월 기준)]

(단위: USD/tCO₂e)

국가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평균세율
우루과이	△	△	△	△	155.9
리히텐슈타인	○	○	○	○	130.8
스위스	○	○	○		130.8
스웨덴			○	○	125.6
노르웨이	○	○	○	○	90.9
핀란드	○		○	○	83.7
네덜란드	○				55.6
아일랜드	○	○	○	○	52.7
프랑스	○		○	○	48.5
룩셈부르크			○	○	48.1
캐나다	○	○	○	○	48.0
아이슬란드	○	○	○	○	38.5
덴마크			○	○	26.5
포르투갈	○		○	○	26.0
영국		○			22.3
라트비아	○	○			16.3
스페인	△	△	△	△	16.3
남아프리카공화국	○	○		○	8.9

국가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평균세율
콜롬비아	○	○	○	○	5.1
칠레	○	○			5.0
멕시코	△	△	△	△	4.1
싱가포르	○	○	○	○	3.8
아르헨티나	○	○	○	○	3.3
에스토니아	○	○			2.2
일본	○	○	○	○	2.2
우크라이나	○	○	○		0.8
폴란드	○	○	○	○	0.1

주: “○”표는 모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부과, “△”표는 일부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부과(스페인: 불화화합물, 우루과이: 휘발유, 멕시코: 천연가스 제외한 화석에너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세계은행, “Carbon Pricing Dashboard”를 바탕으로 작성)

다.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첫째,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보하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실제로 IMF는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탄소세가 세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⁷⁾하였음.

둘째, 탄소세는 가격변동성이 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⁸⁾를 보완할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배출권 거래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운영에 불확실성이 더해져 친환경 기술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배출권 거래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데,

7) IMF, Fiscal Report: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2019. 10.

8)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탄소세를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할당배출권⁹⁾의 평균가격은 11,609 원으로, 거래 시작인 2021년 1월 4일 평균가격 23,000원으로 시작해 8월 초 장내 최고가격인 29,000원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7월 25일 평균가격 6,381원까지 하락해 시장안정화 조치가 설정되기도 하였음¹⁰⁾.

□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운영비용 등의 증가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 비용이 최대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¹⁾.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등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이익률 저하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대될 것이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탄소세 도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10) 2023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1)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 9.), 한국은행

참고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은 시나리오별(톤당 비용) 최소 7.3조원에서 최대 36.3조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22~50개는 탄소세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¹²⁾되었음.

[시나리오별 탄소세 부담 현황(2019년 실적 기준)]

구 분		시나리오 1(저위) (10 USD/tCO ₂ eq)	시나리오 2(중위) (30 USD/tCO ₂ eq)	시나리오 3(고위) (50 USD/tCO ₂ eq)
전체 탄소세액		7조 2,557억원	21조 7,672억원	36조 2,787억원
법인세 세수 대비 비중(%)		10.1%	30.2%	50.3%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부담액(비중)	6조 5,036억원 (89.6%)	19조 5,108억원 (89.6%)	32조 5,181억원 (89.6%)
	영업이익 대비 비중	10.8%	32.3%	53.8%
	영업이익 상위 10개사 제외 시 영업이익 대비 비중	39.0%	117.0%	195.0%
	탄소세>영업이익 배출처 수	22개	41개	50개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2021. 4.

둘째, 탄소세는 간접세¹³⁾ 성격을 가지므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하여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전기료, 상품가격 등의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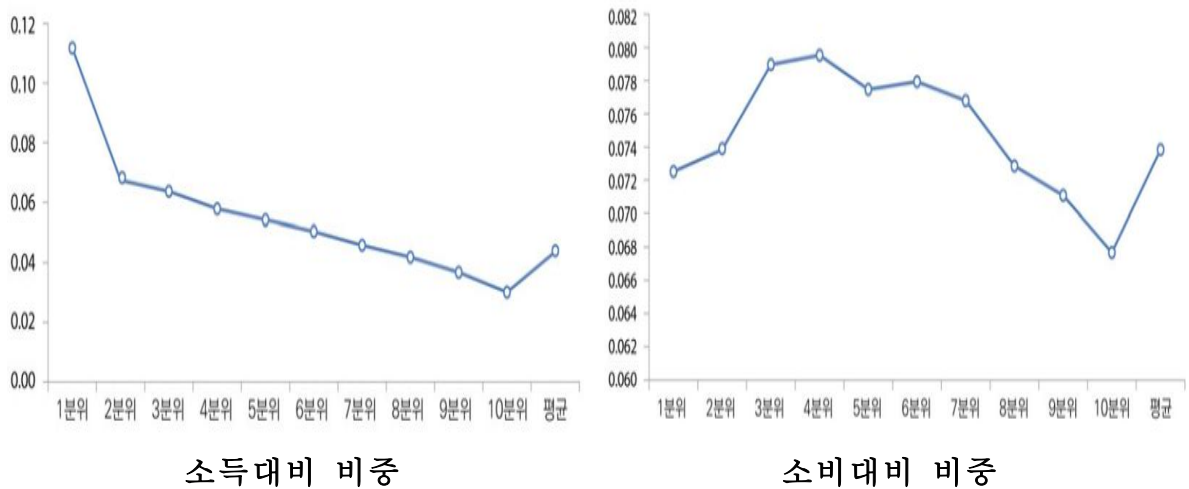
12)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분석보고서(2021. 4.). 전국경제인연합회

13) 경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조세부담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적인 조세 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서, 현행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소득과 소비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적고, 소득·소비가 낮을수록 세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¹⁴⁾되었는데, 이러한 역진성은 취약계층 등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 세부담의 소득·소비대비 비중]

(단위: %)



자료: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2019. 11.),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산업계의 반발과 전기, 가스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2014년 탄소세를 폐지하였고, 프랑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소비에 대한 탄소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세금 인상에 반발한 시민들의 노란 조끼 운동으로 인해 탄소가격 인상을 철회하였으며, 스위스는 2000년과 2015년에 에너지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고, 2021년에는 자동차 연료 추가부담금과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사전

14)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2019. 11.), 국회예산정책처

여론조사에서는 60%의 찬성을 나타내었으나, 실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¹⁵⁾.

셋째, 제정안을 입법화하려는 경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제정안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휘발유·경유·등유·증유·천연가스 등에 대해서 탄소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나,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송부문의 이용자부담 및 환경에 대한 오염자책임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대한 교정과세 목적으로 등유·증유·천연가스 등에 과세되고 있음.

이처럼 탄소세와 목적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정안의 과세대상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하여 현행 배출권거래제도와와의 조합, 탄소배출저감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및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통시설·환경개선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15) 재정포럼 2023년 12월호 중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방법론의 비교 분석」(2023.12.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2024. 8. 30.)하였음.

2. 법률안 조문체계 및 내용

가. 조문체계

□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조문 체계 및 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목적,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표준, 면세, 공제와 환급, 명령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제정안의 조문체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명: 탄소세법
제1조(목적)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제1조(목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프로판 및 부탄, 부산물,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천연가스,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등의 물품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품(과세물품)에 대하여 부과 1. 에너지 자원 2. 산업용 원재료나 동력원 3. 운송수단의 연료 4. 공공기관용, 상업용, 가정용 및 농업·임업·수산업 5. 폐기
※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7조(세율 및 세액의 계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으로 조정 가능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당 8만원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등의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제3조(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제3조(납세의무자) (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제4조(과세시기)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등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6조(과세표준)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	제6조(과세표준)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을 곱한 것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과세대상을 반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을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제9조(납부)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제10조(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종을 혼합하여 반출하는 경우 유종을 혼합한 때를 과세시기로 보아 법을 적용	제11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9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제12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수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제13조(수시부과)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가짜석유제품 판매·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 가능	-
제12조(미납세 반출)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하지 않음	제14조(미납세 반출)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중인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5조(군납 면세) 우리나라 주둔 중인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4조(외교관면세) 외교공관 등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부면세) 외국으로부터 기증된 자선·구호물품, 재수출할 물품,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용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7조(조건부 면세) 외국으로부터 기증된 자선·구호물품,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 면세
제16조(무조건면세) 외국에 기증, 내국무역선 연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군사원조에 의한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면세	제18조(무조건 면세) 외국에 기증, 내항선 연료 등에 대하여 면세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이미 납부된 물품을 원료로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 이전에 징수된 세액 등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제19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현행) +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는 경우 환급 또는 공제 가능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1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과세물품 제조업을 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현행과 같음)
-	제21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음
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 제조자는 제조장별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함	제22조(장부 기록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과세물품 제조업을 포괄승계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함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현행과 같음)
제21조(명령) 정부는 납세보전을 위하여 과세물품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4조(명령)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영수증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2조(질문·검사)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물품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제25조(질문 및 검사)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물품 제조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
제23조(증표의 표시) 질문·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제24조(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는 관할세관장이 처리함	제26조(탄소세의 사무관할)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판매·취득시: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이하 납세보전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	제27조(과태료) 납세보전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제 조장 반출·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

나. 제명 과 목적(안 제1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명: 탄소세법
제1조(목적)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 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제1조(목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u>탄소중립 달 성,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u>

□ 제명 및 목적 조항과 관련하여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교통시설의 확충, 에너지 및 자원, 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자원 확
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정의로운 생
태적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나타
내고 있음.

다. 과세대상과 세율(안 제2조 및 제7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	제2조(과세대상)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프로판 및 부탄, 부산물,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천연가스,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등의 물품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품(과세물품)에 대하여 부과 1. 에너지 자원 2. 산업용 원재료나 동력원 3. 운송수단의 연료 4. 공공기관용, 상업용, 가정용 및 농업·임업·수산업 5. 폐기
※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제7조(세율 및 세액의 계산)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당 8만원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등의 경우 세율의 <u>100분의 50</u>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제정안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씩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도록 하고,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에 더하여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등유, 증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부탄(혼합물 포함), 천연가

스, 석유 부산물, 유연탄 외에 추가로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무연탄, 코크스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률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음.

[제정안 및 현행 법률에 따른 과세대상 비교]

제정안	현행 법률
휘발유, 경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석유 부산물, 유연탄	현행 「개별소비세」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무연탄, 코크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또한, 해당 과세대상이 에너지 자원, 산업용 원재료 또는 동력원, 운송수단의 연료, 공공기관용, 상업용, 가정용 및 농업·임업·수산업, 폐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8만원으로 탄소세 세율을 정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처럼, 제정안은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던 나프타, 무연탄 등도 산업용 등으로 사용될 때에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제정안은 과세대상을 사용목적에 따라 열거하여 에너지 자원
과 산업용 원재료 등으로 같이 사용될 경우 탄소세를 중복하여 과
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려
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술¹⁶⁾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이중과
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탄소세를 중복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6)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부분 참고

라.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3조(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제3조(납세의무자) (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제4조(과세시기)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등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휘발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에게 탄소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마.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의 신고(안 제6조 및 제8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6조(과세표준)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	제6조(과세표준)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을 곱한 것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과세대상을 반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현행과 같음)

□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대하여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납세의 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반출수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한 것을 탄소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반출물품의 사용내역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상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감소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제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바. 납부,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및 수시부과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8조(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을 신고서 제출기한 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제9조(납부)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는 본점 또 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제10조(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종을 혼합하여 반출하는 경우 유종을 혼합한 때를 과세 시기로 보아 법을 적용	제11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9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신 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제12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수시로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제13조(수시부과)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가짜석유제품 판매·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 가능	-

□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수시부과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하도록 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
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
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판례¹⁷⁾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제정안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특례규
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7)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77 전원재판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헌
집26-2, 129]

나.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과세물품조항이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제조량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
경세를 부과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
항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 미납세 반출 및 면세(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12조(미납세 반출)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하지 않음	제14조(미납세 반출)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중인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5조(군납 면세) 우리나라 주둔 중인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4조(외교관면세) 외교공관 등에 납품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부면세) 외국으로부터 기증된 자선·구호물품, 재수출할 물품,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용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17조(조건부 면세) 외국으로부터 기증된 자선·구호물품,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 면세
제16조(무조건면세) 외국에 기증, 내국무역선 연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군사원조에 의한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면세	제18조(무조건 면세) 외국에 기증, 내항선 연료 등에 대하여 면세

□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납세 반출¹⁸⁾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면세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목적에 따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음.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수출장려 및 주요산업 보호 등을 위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수출품에 대한 면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

18)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과 외국항행 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조건부면세¹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증품과 군사원조에 의해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제외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최근 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수출입 상품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고, 선박·항공기 등 수송부문과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수출품 및 의료용 등 특정분야의 원료물품, 선박·항공기에 사용하는 물품, 군수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제외한 것으로 보임.

19) 과세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일정절차에 따라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

아.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폐업 등의 신고,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이미 납부된 물품을 원료로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 이전에 징수된 세액 등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제19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현행) +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는 경우 환급 또는 공제 가능
제1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과세물품 제조업을 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현행과 같음)
-	제21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음
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 제조자는 제조장별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함	제22조(장부 기록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과세물품 제조업을 포괄승계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함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현행과 같음)

□ 제정안은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미 납부한 물품을 원료로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 이전에 징수된 세액 등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는 경우 환급 또는 공제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이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세와의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탄소세로 대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탄소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법정 면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달리 수출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와 주한 외교공관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면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원문]

제15조(군납 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탄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탄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탄소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한편, 제정안은 「개별소비세법」 제22조²⁰⁾와 동일하게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장폐업 등을 통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며, 그 밖에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동일하게 개업·폐업 등의 신고, 장부 기록의 의무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20) 「개별소비세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통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통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명령, 질문 및 검사, 탄소세의 사무관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21조(명령) 정부는 납세보전을 위하여 과세물품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4조(명령)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영수증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2조(질문·검사)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물품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제25조(질문 및 검사)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물품 제조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
제23조(증표의 표시) 질문·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제24조(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는 관할세관장이 처리함	제26조(탄소세의 사무관할) (현행과 같음)

- 탄소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조항과 관련하여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정부가 과세물품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제정안은 해당 사무의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행사 주체를 상세하게 규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 과태료(안 제27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제25조(과태료)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판매·취득시: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이하 납세보전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	제27조(과태료) 납세보전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

□ 과태료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안 제24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4조는 납세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주체도 관할 세무서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외국항행선박 등이 사용하는 해상면세유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판매가격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외국항행선박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카. 부칙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0